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양육비채권에 대한 압류 근거 마련 〉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13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양육비채권에 대한 압류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7. 24.

다. 회부연월일 : 2025.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별정우체국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5인의 위헌의견이 있어,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단서).

Ⅲ. 검토의견

1. 양육비채권에 대한 압류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 지급권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압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권리의 보호) ① ----- ----- -----. ----- ----- ----- ----- ----- -----있으며, <u>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사항

□ 양육비채권에 대한 압류 근거 마련

- 현행법은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¹⁾ 각종 급여²⁾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의 수급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³⁾ 급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상 급여 수급권을 가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
- 1) 「별정우체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便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 「별정우체국법」 제24조(급여) ①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 사망 및 제25조의14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 나. 퇴직연금일시금 /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라. 퇴직일시금
 2.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 나. 유족연금부가금 /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라. 유족연금일시금 / 마. 유족일시금
 3. 비업무상 장해연금
 4. 퇴직수당
- ③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
- 3) 「별정우체국법」 제31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 *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규정은 없음.

채권자⁴⁾가 양육비 이행을 위하여 해당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임.

○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사소송법」 등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⁵⁾를 취할 수 있으나, 급여 수급권 자체에 대한 압류 금지로 인하여 양육비 확보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⁶⁾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급여 수급권의 보호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추가하여 양육비채권의 경우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수급권자 본인 뿐 아니라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의 생활안정 등도 도모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급여의 압류를 금지하는 입법목적에는 수급권자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명시·재산조회(제48조의2, 제48조의3), 양육비 지급을 위한 담보제공명령(제63조의3),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명령(제64조)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제21조의5) 등

6) 예를 들면, 양육비 채무자인 수급권자가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수급권에 대한 압류금지로 인해 급여 지급계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권자가 급여 지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압류가 불가능해짐.

- 그런데 수급권자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양육비 부담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급여의 압류금지조항이 보호하는 자녀의 법익이 해당 조항에 따라 침해되는 이해상충의 상황이 발생함.⁷⁾
-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⁸⁾에서 다수의견(5인)인 위헌의견으로 압류금지조항이 급여수급권 전부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소수의견(4인)인 합헌의견에서도 또한 급여 수급권자인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일부 허용하는 예외를 두는 등, 압류금지조항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입법 개선을 권고하였음.
- 급여 수급권의 경우 현행법상의 압류금지가 없더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의 1/2 이상 압류가 금지되는 등 일정 수준

7)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18. 7. 26. 2016헌마260)

8)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합헌의견 4인, 위헌의견 5인으로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권리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⁹⁾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양육비채권이라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압류 금지의 예외를 두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현재 개정안과 동일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호)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으로 명시하는 등의 수정으로 2025년 7월 23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으므로 수정된 내용에 맞추어 개정안의 내용도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타 상임위원회에 같은 취지의 법률안¹⁰⁾들이 계류되어 있어 해당 법률안의 심사 경과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9)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10)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1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2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4호) 등

<공무원연금법(법률 제21026호) 개정 조문 비교>

구 분		내 용
제39조	개정전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u>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u>
	개정후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u>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채납처분을 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u>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¹¹⁾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u>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¹²⁾</u>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토대로 재작성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양육비 채권자가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채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별정우체국연금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11) 각주 9번 참조

12) 동 개정안 부칙 제2조도 문구가 일부 다르지만 유사한 적용례를 두고 있음.

부칙 제2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비채권이 성립한 경우(이 법 시행 당시 수급권자에게 양육 의무가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관련 조항이 수정의결 되었으므로 동일한 취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5